

## 충청남도 농촌공간 정비대상 지역현황 및 과제

이 샘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책임연구원  
saemlee@cni.re.kr

본 연구는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제정 추진 예정임에 따라, 충남의 농촌공간 정비대상 지역 현황을 살펴보고, 충남의 과제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음

### CONTENTS

1.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지원 배경
2.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촌공간계획제도
3. 농촌공간정비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3. 충청남도 농촌 마을 주거-공간, 주거-축사 혼재 현황
4.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기본방침에 따른 충남의 과제

### 요약

- 충청남도 농촌마을에 무분별한 공장 밀집, 축사로 인한 악취 문제 발생 등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과도하게 입지함에 따라, 농촌 경관과 환경이 훼손되어 농촌다움을 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법률」제정 예정, 이에 따라 향후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촌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농촌 공간 정비-재생 등에 필요한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임
- 농촌공간계획은 공장과 축사 등 농촌위해시설을 분리, 이전, 재배치하기 위해 농촌마을보호지구, 축산지구, 산업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고, 농촌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임
- 충남의 농촌지역 난개발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해시설의 이전과 집적화시킬 대상 지역을 발굴하고,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와 충남 내 농촌재생 프로젝트 기획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 내 농촌 마을 주거지역에 혼재된 공장(주거-공장 혼재지역)과 축사(주거-축사 혼재지역)가 밀집된 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정책과제를 마련함



# 01

##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지원 배경

-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저개발로 인해 지역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건강권과 환경권의 악화 사례 발생
  - 유해 물질 배출과 소음을 발생시키는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농촌 마을 인접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주거환경뿐 아니라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남
  - 농촌 마을 내 축산 악취는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될 수 있으며, 축산업과 농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
  - 농촌에 무분별하게 자리 잡은 위해시설 일부는 악취와 오염물질이 관리되지 않는 상태로 배출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함

- 사례1)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500m 떨어진 비료 공장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인해 마을 주민 80명 가운데 33명이 암에 걸리고, 15명이 사망, 공장노동자 5명도 암에 걸림
- 사례2) 김포시 거물대리에서는 주거지 인근에 들어선 주물, 금속 가공공장으로 인해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되고, 10년 이상 마을에 거주한 노년층 65세 이상 마을 주민 76명이 천식과 고혈압 등 건강 피해를 봄
- 사례3) 김해시 주촌면에서는 대규모 축사들과 인접한 거리인 2km 안팎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한 해 동안 4,000건 이상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 주촌면 주민뿐 아니라 인근 도심지 주민까지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

출처: 송미령 외, 2021

- 특히나, 농촌지역에 개별로 입지하는 공장이 주로 위치하고 주택과 공장이 혼재하는 경우도 많아 농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발생
  - 공장입지는 크게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구분되는데, 계획입지는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하고 육성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나타남
  - 이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 화물차 운행을 위한 도로와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주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오염 방지시설이 갖춰져 있음
  - 반면, 개별입지는 계획 입지 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용지를 의미하는데, 계획입지와 다르게 공장 설립을 위한 오염물질 정화나 도로 정비 등 적절한 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도시와 농촌 간의 입지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개별입지 비중이 농촌지역에 큰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전체 공장 약 19만 개소 가운데 도시 52%, 농촌 48%로 도·농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도시는 계획 입지 비율이 약 50%인데 반해, 농촌의 경우 개별입지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송미령 외, 2021)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 설립된 공장의 경우 58.9%가 계획관리지역에 자리 잡았고, 농촌지역에 입지 하는 새로운 공장 대부분이 체계적인 계획으로 인해 자리 잡은 것이 아닌 개별입지 형태로 들어서면서 주거 환경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능성이 존재함
  
- 한편, 주거지 인근에 있는 축사는 악취와 분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농촌주민의 민원이 대량 발생하며,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만, 농촌 주거지와 가까운 장소에 축사가 대규모로 존재해 신규 입지로 대규모 이전하는 것을 대책을 내세우고 있음(송미령 외, 2021)
  - 주거지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악취가 각 지역 주민의 갈등과 피해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이에 따라 정부는 가축사육제한지구 설정과 신규 축사의 입지 규제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환경부 권고안 이내에 있는 축사는 약 48%에 불과함
  - 더욱이, 축사들이 위치한 지역 약 93%가 농촌지역으로 나타났고, 주거지 비중이 높은 계획관리 지역에 전체 축사의 약 48.8%를 차지함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촌지역 토지 이용 관리체계 미흡

- 현행 토지이용제도는 도시지역과 시가화구역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된 상태로 농촌지역의 효율적 토지이용계획은 거의 없는 상태임
- 이에 따라 국토 균형발전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고, 주거환경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이 농촌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
- 농촌 읍·면 지역은 대부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농지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여러 개별법상 규제가 적용 중임
- 하지만, 개별 법률에서도 용도지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정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공간의 발전 방향과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는 실정임
- 더욱이 관리지역은 농촌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용도 개발이 가능한데, 계획관리지역은 관련 법률, 정책 등에 따라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관리됨
- 이는 농촌지역 인근에 공장, 축사, 위험물시설 등이 입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입지 관리가 충분히 되지 못하고 있음

● 개발 성격이 강한 관리지역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농촌 주거지 인근에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규제 없이 가능해지고 있는 상태

- 농촌 주거환경을 보호·정비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지만, 농촌 마을이 충분히 지정되지 못한 상황
- 현실적인 취락지역 관리 수단도 부재
- 난개발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계획 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 농촌 인구의 28.8%에 해당

## ■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지원 관한 법률

- 농촌 난개발 해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유해공장과 환경 민원이 많은 축사 밀집 지역을 이전시키거나 집적화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3.3.28.)을 제정
  - 농촌 공간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주택, 축사, 공장, 창고 등이 혼재하면서, 농촌다움이 사라지고, 주민 안전에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
  - 체계적인 농촌 공간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들어선 위해시설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의 필요성이 요구
-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현(現)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3.3.28.) 제정에 따라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농촌공간계획, 농촌재생 프로젝트, 농촌협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함
  -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삶터, 일터, 쉼터의 역할을 하는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나누면, 1) 농촌 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 특화지구를 도입 2)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으로 수립하는 것을 유도, 3) 농식품부·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 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임

1) 농촌 공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함

- 법률은 7개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하고 있는데,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지정 가능함
- 주거지역과 관련해서는 농촌마을 보호지구가 대표적이며, 유해시설로부터 농촌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등의 입지를 유도하여 정주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주민이 모여 사는 일정 구역을 지구로 지정, 유해시설을 정비, 복지, 문화, 교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산업시설, 에너지시설 등을 집적화하여 산업 연계성을 높이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를 도입함
- 농촌 경관을 형성하고 농업유산 등 농촌 자원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경관 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도 포함함

2) 농촌공간계획은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정부가 최소한의 농촌공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특색이 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방식으로 수립함

- 지역여건과 변화에 따라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체계가 도입됨
- 시장·군수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민은 주민협정,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지구의 지정과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기본방침을 제시함
- 정비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이는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함
- 시·군은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장기 전략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 농촌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농촌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을 선정함
- 시·군 기본계획을 통해 그 지정 및 해제를 결정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종합적 사업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 3) 농식품부와 시·군 간의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의 기능을 공간적으로 접근해 재생시키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시·군의 시행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시·군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지원 여부와 기관 간의 투자 내용과 비율 등을 약속
- 통합적으로 지자체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그 효과를 높이고 농촌지역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시행계획의 성과 창출을 하고자 함
- 2031년까지 400개 생활권역별로 ① 농촌공간정비, ② 주거·정주여건, ③ 일자리·경제, ④ 사회·생활서비스 등 핵심 기능을 재생 지원하는 농촌재생프로젝트 이행을 목표로 함

- 현재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방침은 국가차원에서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임



## ■ 농촌공간계획제도

- 농촌공간계획제도는 농촌다움의 회복, 농촌의 경제·사회·환경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획제도임
  -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고 증진하는 재생 계획으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기본계획, 시행계획으로 구분함
-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협력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통합(패키지) 지원 형태로 농촌 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농촌공간재생 분야인 위해 시설 정비, 주거와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과 경제기반 조성, 부문별 생활 서비스 확대의 단계적이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
  - 농촌 인구 감소, 과소화 등에 대응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 제도 등 종합적 농촌 공간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기능 재생 계획 수립의 의무화, 토지 이용 개선과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촌 특화지구(7개)를 도입
- 농촌특화지구 도입은 크게 7개소를 나뉘는데,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임
  -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마을 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농촌산업지구: 농촌 지역 내 공장,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축산지구 :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생산·제조·가공시설 및 사무 공간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재생에너지지구: 에너지원의 환경 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경관농업지구: 동종·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형성을 통해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지구

- 농업유산지구: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고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시행해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고자 함

- 농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재구조화와 재생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재검토하고, 특화지구를 기본으로 중앙에서 기본방침을 만들고 시군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들게 됨
- 농식품부장관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태 환경 및 농촌다움의 유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별로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 결정 가능

●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

-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해야 하며, 중앙농촌공간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기본방침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 가능
- 농촌정책의 방향과 목표, 농촌공간 재구조화,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 농촌위해시설 현황 및 정비, 정주·주거여건,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배치, 경제·일자리 기반 활성화, 농촌생활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현황과 기본구상, 재생활성화지역 총괄 사업계획과 세부 사업계획, 농촌특화지구 지정, 사업비 집행 및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을 포함함
-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음

- 타 계획과의 관계는 국토계획, 도시·군 계획과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의 관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과의 관계와 연계성을 가질 예정

- 국토계획, 도시·군 계획과의 관계

-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성
  -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군 계획에 따른 생활권 준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의 관계

-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목표와 사업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과의 관계

- 농림축산식품부 이외의 부처 사업을 포함해야 할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계획에 수록된 사업 내용을 우선 포함

## 03

### 농촌공간정비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마을 내 유해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시설이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2021년 시범지구 4개소(과산, 상주, 영동, 김해)를 거쳐, 2023년 3월 기준 총 38개 지구를 대상으로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있음
  - 최근 마을인근 유해시설 정비를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사업지구 6개 추가 지정(23. 6.)
  - 2023년 신규 사업지구로 1차 공모 12개 지구 포함 총 40개 지구를 선정 예정임
  - 농촌협약과 연계한 올해 선정 지구(8개소) 가운데 충남은 예산 창소·신례원리, 아산 군덕리, 서산 모월리로 농촌협약과 연계해 선정되었음
  -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생활권 내 난개발된 유해시설 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새롭게 도입함
- 올해 신규로 선정된 지구는 마을 내 유해시설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추진할 예정
  - 농식품부는 3~4월 중 2차 공모를 통해 신규 대상을 추가로 20개 지구를 선정할 계획
  - 최근 마을 인근 유해시설 정비를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사업지구 6개 추가 지정(23. 6.)은 모두 악취와 오폐수의 원인이 되는 축사 정비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포함함
  - 그중 4개소에서는 축사 등의 정비와 더불어 빈집 정비도 함께 추진할 예정
  -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추진 기반이 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

- 동 법률은 농촌공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 지원체계, 농촌특화 지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동 사업은 2021년 시범지구 4개 지구(괴산, 상주, 영동, 김해)를 거쳐 2022년부터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현재까지 총 38개 지구를 대상으로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함
- 올해는 신규 사업지구로 총 40개 지구를 선정, 농촌협약과 연계하여 8개 지구를 지난 2월에 선정하였고, 이번 1차 공모를 통해 12개 지구를 선정함

\* 2023년 신규 1차 선정 지구 \*

(농촌협약 연계, 8개) ① 예산 창소·신례원리, ② 아산 군덕리, ③ 서산 모월리, ④ 함안 화천리, ⑤ 함안 이룡리, ⑥ 익산 농장지구, ⑦ 익산 학호지구, ⑧ 함평 동정리

○ (1차 공모, 12개) ① 청주 장양지구, ② 증평 남차1지구, ③ 당진 거산지구, ④ 완도 농업유산지구, ⑤ 곡성 구원지구, ⑥ 나주 오룡지구, ⑦ 상주 목상지구, ⑧ 청송 덕리지구, 예천 상금곡지구, 함양 금호지구, 밀양 봉대지구, 창원 오서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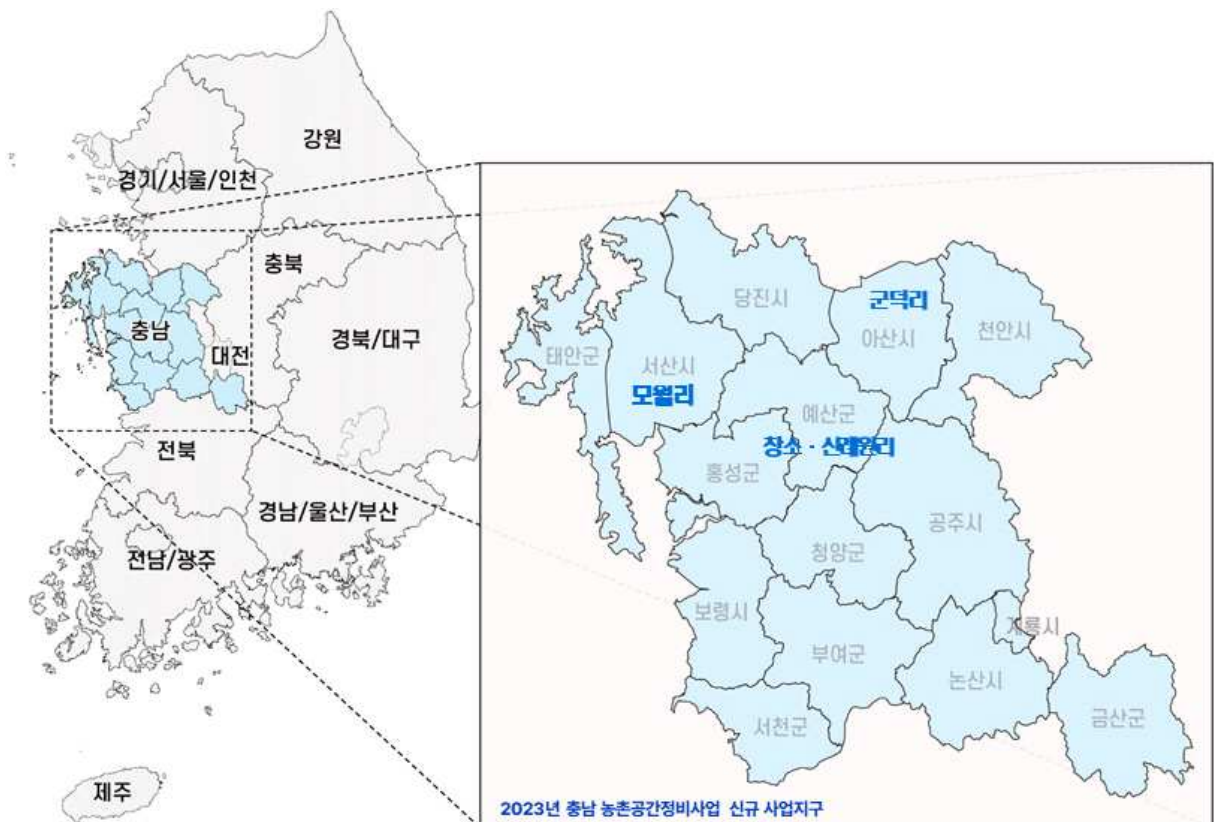


그림 1. 충남 내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사업지구(2023)

-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전체 신규사업지구는 2023년 6월 기준 총 26개소로, 충청남도는 4개소 나타남(그림 1)
- 충청남도는 예산군 창소지구, 아산시 군덕지구, 서산시 모월지구, 당진시 거산지구로 나타남
- 그 외 타 지역은 경상남도 8개소, 전라남도 5개소 다음으로 4개소 순으로 선정됨

●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지구 선정 결과(26개소)

| 시·도     |         | 시·군 | 사업지구  |
|---------|---------|-----|-------|
| 충청남도(4) |         | 예산군 | 창소지구  |
|         |         | 아산시 | 군덕지구  |
|         |         | 서산시 | 모월지구  |
|         |         | 당진시 | 거산지구  |
| 그 외 지역  | 충청북도(3) | 청주시 | 장양지구  |
|         |         | 증평군 | 남차1지구 |
|         |         | 괴산군 | 사리지구  |
|         | 전라북도(2) | 익산시 | 농장지구  |
|         |         | 익산시 | 학호지구  |
|         | 전라남도(5) | 함평군 | 동정지구  |
|         |         | 완도군 | 부흥지구  |
|         |         | 곡성군 | 구원지구  |
|         |         | 나주시 | 오룡지구  |
|         |         | 담양군 | 봉안지구  |
|         | 경상북도(4) | 상주시 | 묵상지구  |
|         |         | 청송군 | 덕리지구  |
|         |         | 예천군 | 상금곡지구 |
|         |         | 포항시 | 방산지구  |
|         | 경상남도(8) | 함안군 | 이룡지구  |
|         |         | 함안군 | 화천지구  |
|         |         | 함양군 | 금호지구  |
|         |         | 밀양시 | 봉대지구  |
|         |         | 창원시 | 오서지구  |
|         |         | 함안군 | 입곡지구  |
|         |         | 거제시 | 울포지구  |
|         |         | 사천시 | 화전지구  |

-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업유산지구 정비사업에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 논 농업유산지구가 선정됨
  - 2023년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농업유산지구 정비사업이 최종 선정(23.3.22)됨에 따라 50억원을 확보하여 논 농업유산지구 내 핵심보전 구역에 위치한 축사나 빈집 등 유해 시설 철거와 재생사업 추진 예정
  - 정비된 공간에 귀농 귀촌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제공과 복원된 구들장논 제공으로 영농활동을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할 계획
  - 전통 농업, 문화경관 복원과 정비를 시행하고 치유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청산 해양치유공원과 연계해 관광 활성화 도모를 추구하고자 함
  - 총 사업비 50억(국비 25억, 도비 7억5천만원, 군비 17억5천만원),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복합문화시설과 세계농업유산센터 등 조성 예정
  
- 충청남도 내 지자체 가운데 농업유산 보전지역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 마련 필요
  - 충남 내 15개 시군 지자체 가운데 서천군 한산모시 농업유산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신청을 염두에 두고 추후 선정될 수 있도록 한산모시농업유산 보전방향과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확보 필요

## ■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2022.12)

### (1) 사업 목적

-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유해시설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지원, 농촌 공간의 재생을 도모

### (2)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8조, 제39조
  -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관련 조항을 준용

### (3) 사업 주요 내용

- (기본방향) 농촌공간계획 기반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마을 내 유해시설의 정비(철거 또는 이전)와 정비한 공간을 활용한 생활 SOC 구축 등을 지원
- (정비지구) 공간 재구조화에 따라 마을 내 유해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구
- (이전지구) 공간 재구조화에 따라 기존의 유해시설을 이전·재집적화하는 지구

### (4)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농촌

- \* 해당 시·군의 농촌공간전략계획에서 설정한 농촌생활권

재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5) 지원내용

'22년 기준 개소당 최소 50억~최대 180억(국비 50%, 지방비 50%)

\*23년 기준 생활권별 최대 250억 지원

최종적인 사업 지원 금액은 전문가, 부처 협의 후 확정(지방비 중 30% 이상은 시·도비)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 4.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 위탁시행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사)

### 5. 사업기간 : 5개년

### 6. 지원규모

- 유해시설 정비를 기본으로 지구당 50~180억원을 지원하고, 생활권별로 최대 250억원 이하 지원 가능(국비50%, 지방비50%)

\* 예산과목: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4160-431-330-03)

\*\* 연차별 10%, 15%, 25%, 25%, 25% 비율로 지원 (지방비 중 30% 이상은 시·도비)

- 단,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유해시설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투자

- 단, 연도별 지원규모는 정책 방향 및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 충청남도 농촌 마을 주거와 공장·축사 혼재 현황

#### (1) 충남 농촌 마을의 주거-공장 혼재 현황

- 충청남도 내부 자료(2022)를 분석한 결과, 도내 돈사와 계사를 포함한 축사의 현황은 총 2,191개소로 나타났고, 홍성군, 당진시, 천안시, 논산시 순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충남 내 시군 자자체별로 살펴보면, 홍성군은 가장 많은 418개(18.9%), 당진시는 251개(11.5%), 천안시 222개(10.1%), 논산시 210개(9.6%)로 조사됨
- 충청남도 내 공장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 On)에 등록된 충청남도 소재 공장 수를 알아본 결과(2022), 총 11,234개로 나타남
  - 충남 내 시군 자자체별로 살펴보면, 천안시는 가장 많은 3,348개(29.8%), 아산시 2,215개(19.7%), 금산군은 841개(7.5%)의 순으로 공장의 수가 나타남
- 충청남도 내 공장으로부터 500m 대기질 영향권에 있는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 96,167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함
  - GIS 기반 공간분석을 위해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인구격자인 500x500m 한정하여 분석함

- 자연취락지구 내 대기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농촌 마을을 살펴보기 위해, 시·군 지자체별 공장이 위치하는 지점을 조사하고, 500m 이내에 거주하는 농촌 인구를 조사함
  - GIS 기반 공간분석 방법을 통해, 충남 내 실질적으로 대기질 악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 있는 (잠재)지역을 조사함
- 분석 결과, 주거-공장이 혼재된 자연취락지구는 천안시가 8개소, 아산시가 5개소, 당진시, 금산군이 2개소, 공주시가 1개소로 나타남(그림 2)
  - 충청남도 내 공장으로부터 500m 대기질 영향권에 있는 농촌 마을은 천안시 성환읍, 성거읍, 아산시 송악면, 당진시 행정동, 공주시 반포면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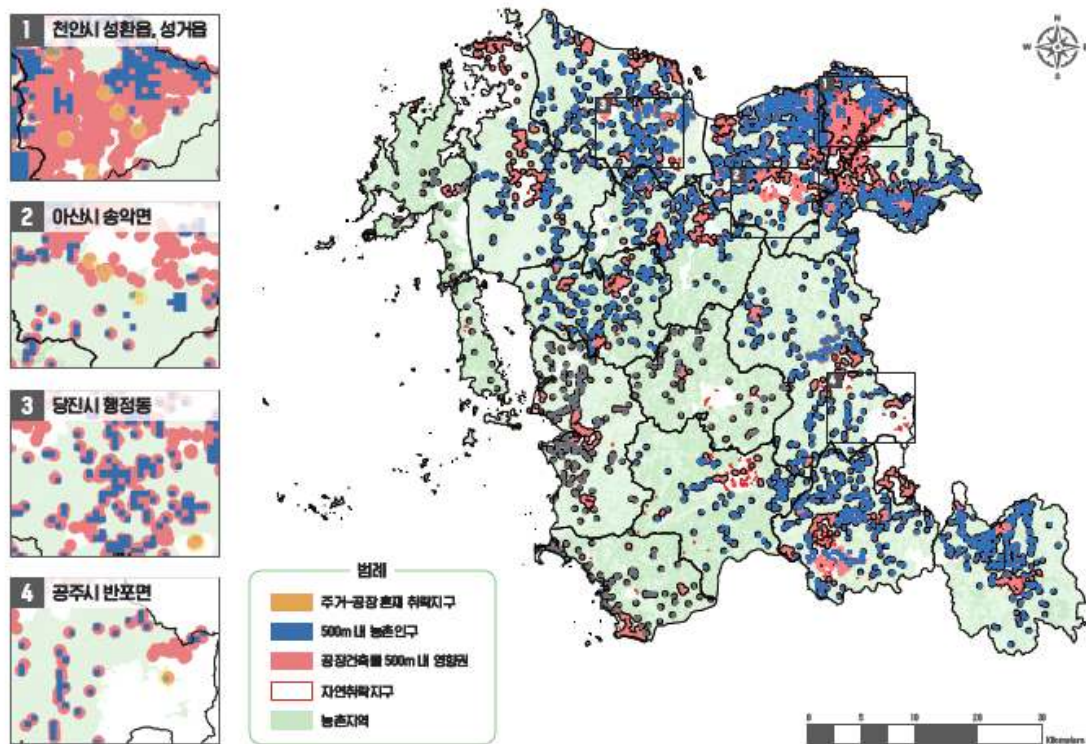


그림 2. 주거-공장 혼재 취락지구

## (2) 충남 농촌 마을의 주거-축사 혼재현황

- 충청남도 내부자료(2022)를 통해 살펴본 결과, 도내 돈사와 계사를 포함한 축사의 현황은 총 2,191개소로 나타났고, 홍성군, 당진시, 천안시, 논산시 순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충청남도 내 시군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홍성군은 가장 많은 418개(18.9%), 당진시는 251개(11.5%), 천안시 222개(10.1%), 논산시 210개(9.6%)로 조사됨
  
- 자연취락지구 내 악취에 영향을 받는 농촌 마을을 살펴보기 위해, 시군 지자체별 축사가 위치하는 지점을 조사하고, 500m 이내에 거주하는 농촌 인구를 조사함
  - GIS 기반 공간분석 방법을 통해, 충남 내 실질적으로 축사악취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지역을 조사함
  
- 분석 결과, 축사로부터 50m 악취 영향권에 거주하는 농촌 인구는 총 32,876명으로 충청남도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함
  - 충청남도 내 돼지 농가, 닭 오리 농가, 축사 농가를 시군별로 GIS 분석 방법을 통해 지점을 확인하고 중첩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3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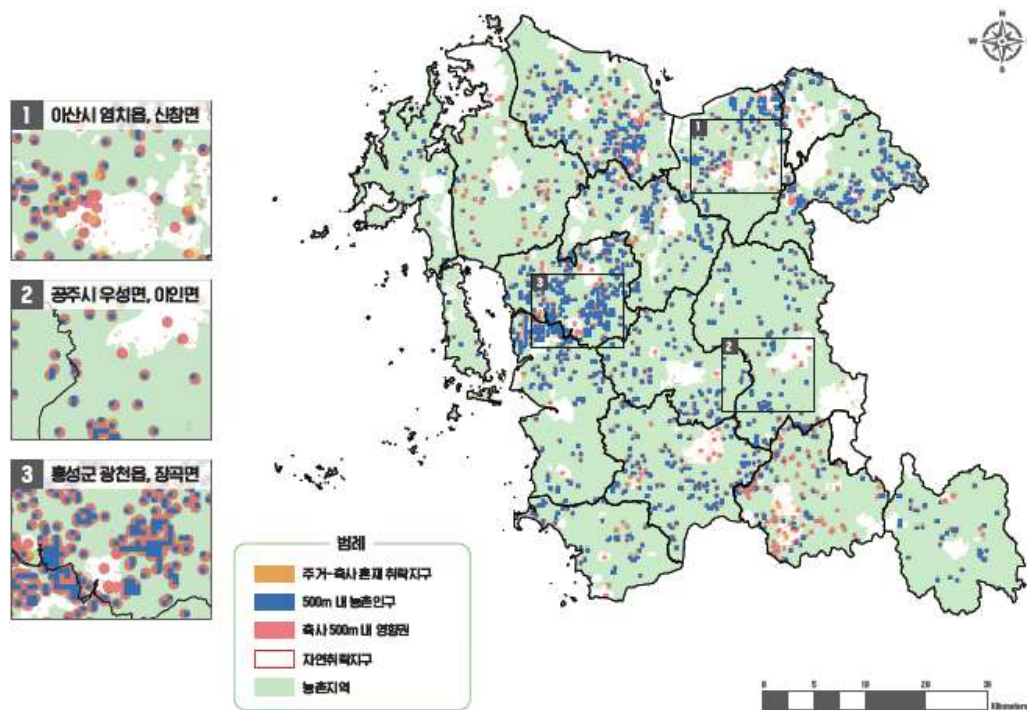


그림 3. 주거-축사 혼재 취약지구

- 충청남도 시·군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산시 염치읍, 신창면이 가장 많은 지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지점은 공주시 우성면, 이인면,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난 지역은 홍성군 광천읍, 장곡면으로 조사 됨
- 시·군 내 가장 높은 비율의 주거-축사 혼재 취약지구는 아산시, 공주시, 홍성군 순으로 나타남
- 조사된 지점은 충청남도 내 환경 민원이 높은 축사가 많은 지역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농촌공간정비 사업 공모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자료임
- 충남 내 환경 민원을 기반으로 한 축사들의 이전과 집적화 대상 발굴이 중요

## 04

#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기본방침에 따른 충남의 과제

- 충남 내 재생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재생사업을 통해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충남 내 시·군 지자체 가운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타 지역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나, 농촌 주거지에 무분별하게 개별 입지한 공장은 농촌 주민은 주거환경이 훼손되거나 건강 안정상의 피해를 봄
  - 융복합적 접근의 시도로 타 부처와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농촌재생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농촌공간계획과 농촌공간 관련 사업들이 향후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재생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농촌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충남 내 시·군 지자체 지역적 특징을 반영한 농촌공간 취약지역 최적의 사업지 발굴 필요
-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협약 중심의 지역발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대비 필요
  - 농촌공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의 중요성이 있는 만큼 농업인 역량 강화 필요
  - 각 시·군 지자체에 농촌공간사업에 대한 주민 역할 세분화의 필요성과 지역의 환경적 취약지역을 위한 데이터 확보 필요